



지능정보 사회를 보는 法

발행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www.nia.or.kr

카카오 먹통 사태에 얽힌 이야기들

김형준 수석연구원 | 정책본부 지능화법제도팀

지 못한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1. 스마트하지 못했던 주말

지난 10월 15일 토요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SK C&C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 기실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고로 인해 서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겨 카카오를 비롯해 불이 난 IDC(Internet Data Center)에 입주한 업체의 서비스 일부가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고로 서비스가 다운되면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인 연동되는 다른 서비스는 물론, 네이버, SK그룹 등 IDC에 입주한 기업들의 서비스와 지도, 쇼핑 등 카카오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국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 85%¹⁾를 자랑하던 카카오가 화재로 모든 기능이 멈춰버리자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카카오를 이용한 결제도 불가능해지는 등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기프트콘을 사용해 식사하던 사람들은 기프트콘을 사용할 수 없었고, 가게들은 카카오 페이로 결제가 되질 않아 판매가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급히 연락을 주고받아 만나야 할 사람들도 혼란을 겪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는 있지만, 스마트하

2. 돌이 되지 못했던 카카오

IDC 화재는 8시간 후 진압되었지만,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순간에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던 서비스가 멈추고 나니, 우리의 삶에 많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거의 독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유율 85%의 서비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되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은 예측할 수 없었던 화재였다고는 하지만, 왜 SK나 카카오는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그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요?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컴퓨터의 다운이나 고장으로 그동안 열심히 작업했던 파일을 홀라당 날려 먹은 기억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날 때마다 Alt + S 또는 Ctrl + S 등을 눌러 저장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문서나 파일이라면, 폴더를 달리하거나 별도의 저장매체에 두 번씩 세 번씩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원화를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

1) 2021년 9월 기준

이터를 송수신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원화를 통해 한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시 다른 쪽을 이용해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거나 복제된 파일을 보관합니다. Server나 서비스에서도 이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카카오의 서비스들은 이원화 없이 단일 서버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하나뿐인 서버의 다운으로 결국 먹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화재나 홍수, 지진 등에 대한 대응방안과 물리적인 침해나 해킹과 같은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대책을 어떤 수준으로 마련할지는 기업 경영진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있어서 비용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 비용은 결국 사용료나 광고료 등 소비자에 전가되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기업으로서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서버의 이원화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은 인터넷 서비스의 필수이며 상식인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KT, SK, LG U+ 등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IDC에 입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개인정보 등 중요하고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3년에 데이터센터 ‘각’을 춘천에 완공했습니다. 네이버의 자체 데이터 센터인 ‘각’은 진도 9 이상의 지진뿐만 아니라 홍수,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에서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력공급이 중단될 때도 2.5초 만에 자체 발전이 가능하고, 이를 72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전원장치도 갖추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세종시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SI(System Integration)²⁾ 분야 계열사들도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외국의 대형 IT 기업들도 당연히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³⁾ 그런데 카카오는 아직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메신저,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데이터센터 없이 다른 회사의 IDC를 임차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⁴⁾

3. 정보통신과 재난 대응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중단의 여파를 실감하게 되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통신 사고 대응은 주요 정보통신망(network) 시설 중심의 사고대응과 해킹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

2) 기업이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 개발과 구축, 운영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3) 다만, 외국의 기업은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IDC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카카오는 2023년 경기도 안산에 자체적으로 준공한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9385>)

재난 대응을 위한 대비방안을 수립하게 하고 화재나 정전, 홍수나 지진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기본적인 정보통신망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사업자들은 대비방안을 세우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결국 재난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은 마련하였지만 법률상의 의무가 아니기도 했고, 일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재난에 대한 대비가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한편, 이번 화재사건에서는 화재 그 자체 보다는 오히려 카카오 등 서비스가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물적 피해 보다는 그로부터 파생된 2차 피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익명기능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면서 곤란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개인정보 유출로 귀결되자, 인증서부터 수많은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서버가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며 더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국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몇 건 제출되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

을 예방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은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 개정안들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추가하고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담게하는 내용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운영하는 사업자를 보호 조치의무자로 추가하여 사고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기본법」 이외에 데이터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도 제출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데이터센터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하는 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에 대해 재난 보호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의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화재 등의 사고에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법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방송과 통신은 분리된 산업 영역이었습니다. 방송은 TV나 라디오 같은 것이었고, 통신은 개인이 개인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신망을 이용한 IPTV나 OTT 등이 등장하면서 방송과 똑같거나 유사한 기능이 수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에도 방송과 같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부과하고 IPTV 등 통신망을 이용해 방송을 접하는 사람에도 방송과 같은 정보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신에 대해 방송과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 일을 하는 기업을 방송통신사업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방송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카카오나 네이버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방송통신사업자가 아닐 수 있어서 이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방송통신 재난에 직접 대응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통신 기본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사회에 대응하고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불분명해지자, 방송이 수행하는 언론의 기능과 공익적인 안정적 서비스가 통신에서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

문에 이번 사태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 의무를 지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임차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가 모호해집니다. 데이터센터를 빌려주는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자에게 데이터센터의 운영·관리에 참여하게 할까요? 첨단 기술과 다양한 고객 기업의 데이터가 함께 보관된 데이터센터를 함부로 개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업비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업자의 개인정보나 소비자 정보가 함께 있는 곳을 같이 관리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사업자로서는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지진, 각종의 사고를 권한 없이 책임만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데이터센터 이용이 꺼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은 이런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외국에도 재난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입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통신망의 시설 안전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에 중심을 두고 있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일상적인 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의 장애는 민사적인 문제이니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기업과 계약을 맺은 후 사용하는 서비스가 문제가 생겨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미국 등 몇

나라에서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서 자칫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원화가 가장 대표적이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장애로 인한 기업의 손해는 즉시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고, 주주들은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니 자연스럽게 기업은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법률을 통해 각종 규제를 새롭게 만들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방법입니다.

4. 거대 독과점 기업의 딜레마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가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카카오 서비스가 대부분 독과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택시를 타기보다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해서 집앞에서 택시를 타고, 운전자는 카카오내비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이도 카카오페이를 통해 물건을 사고, 친구에게 선물도 하고 전기·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특히 메신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메신저로 시작해서 일상 생활에서 모든 국민이 쓰는 서비스이다 보니 한번 먹통이 되면 그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 서비스에 익숙해져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계속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Lock-in 효과라고 하고, 한 개의 서비스를 사용하다 그에 파생되는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때 국민 대부분이 컴퓨터 OS로 모두 Windows를 쓰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같은 MS사의 internet explorer만 사용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카카오 이외에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카카오를 이용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결제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고 결제기능을 통해 손쉽게 요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비단 카카오택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카오서비스가 우리 일상의 곳곳에 선택의 여지 없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작과 함께 시장에서의 독점은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1890년대에 이미 반독점법(Anti-Trust Law)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부자 중의 한 사람인 록펠러가 세운 스탠다드오일社는 반독점법에 따라 회사가 34개로 분리되었고, 미국 통신 시장을 독점하던 AT&T는 반독점법의 철퇴를 맞고 8개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공정한 시장경제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행정기관의 규제 활동을 규율하는 법령들을 경제법이라고 부르며,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이 중첩되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나 사업자 사이의 갑질을 금지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제와 소비자 피해 보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이 거래상의 지위나 시장지배력을 사용하여 독점화되는 것은 강력하게 규제됩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경우는 조금 독특합니다. 불공정한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시장에 문자를 전송하는 메신저를 개발하여 거기에 덧붙여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며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이지, 다른 회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병하거나 경쟁사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카카오 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독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독점의 경우에 그 독점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업 활동을 규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점기업이 무너지거나 기능이 멈추어 이번 사태와 같이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미 독점화된 시장에서는 그 서비스를 대체할 다른 사업자가 없거나 소규모 사업자만 남기 때문에, 서비스가 멈추게 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독점의 비효율성이겠지만 특별한 대응 방안은 없습니다. 이미 Lock-in 된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플랫폼에서의 독점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전의 독점은 특정 영역에서만 이루어져 다른 시장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은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거대화된 플랫폼 기업이 갑작스럽게 특정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많은 입주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주기업을 차별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⁵⁾

쇼핑몰 플랫폼들이 쇼핑몰 거래의 데이터를 독점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내는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은 한 개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까지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 독점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거래 분야를 나누어 그 분야에서의 독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 거래분야를 정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거래 분야를 한정하게 되면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다른 영역에 미치는 파급력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 소비자의 선호가 몇 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어 독과점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온

5)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1050670.html>,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21)

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업체 등 자영업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중단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2017년 Google이 자회사인 Google Shopping의 검색 결과를 다른 경쟁사와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적발해서 약 24억 유로(한화 약 3조 4,1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안들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사업자, 소비자는 물론 광고 사업자와 배달하는 플랫폼 노동자(온라인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해 아직 입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두고 있을 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역시 사업자이고, 결국 사업자는 이익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독점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로 인해 자영업자와 입주업체는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이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역사가 주는 교훈

조선을 흔히 기록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유산을 통해 꼼꼼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외세에 대항하여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도록 한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만대장경의 장경판전은 수없이 많은 재난과 전란에도 당시의 건축 기술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자연과 전쟁의 피해에도 안전하게 팔만대장경을 보관해왔고,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은 5부를 똑같이 인쇄하고 분리 보관하여 외세의 침략과 전쟁을 거치는 동안 일부는 소실되었지만 후손들은 그 사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지혜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철저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데이터의 2중, 3중의 안전장치와 백업의 필요성을 팔만대장경과 조선왕조실록의 보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허생전(許生傳)의 주인공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한 상품 독점만으로도 전국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낙후된 시장상황을 보며 원시적이고 전혀 발전하지 못한 조선의 경제체계를 한탄했었습니다. 또,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이용해 독점을 허용받았던 육주비전(六注比廛)은 자신들을 통하지 않는 물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스

스로가 독점적 플랫폼이 되었지만, 육주비의 독점은 다른 상인을 괴롭히고 정부의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되었고, 조선시대 상공업의 발전을 가로막은 원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은 물리적인 재난관리,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처방안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얹혀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이 점차 온라인화되어감에 따라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사회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기 위한 법과 제도가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 글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